- 【참고 1】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1163호) [시행 2009. 1. 1] [대통령령 제21163호, 2008.12.17, 제정]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평가·인증의 실시)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(이하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·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인정기관은 평가·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·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·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3조(평가·인증 결과의 공개) ① 인정기관이 평가·인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·인증을 신청한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·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인정기관의 지원)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·인 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·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5조(인정기관의 지정기준)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·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·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
  - 2.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을 포함 한다)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,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
  - 3. 학교에 대한 평가 · 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
  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.
- 제6조(인정기관의 지정)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(이하 "신청기관"이라 한다)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신청기관의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(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만 첨부한다) 또 는 이에 준하는 서류
  - 2. 학교에 대한 평가 · 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

- 3.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
- 4. 평가·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·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
- 5. 평가 · 인증의 방법 · 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
- 6. 평가 · 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
- 7.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
-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,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④ 인정기관은 평가·인증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·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7조(인정기관의 재지정) ①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.
- 제8조(이의 신청)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하여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)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·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·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인정기관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
  - 2.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
  - 3.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호선)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- 1. 교원
- 2. 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11조(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, 의견 진술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21163호, 2008.12.17>

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-26호

##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

「고등교육법」제11의2제3항 및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제5조 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「고등교육 평가·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6. 30. 교육과학기술부장관

## 고등교육 평가・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
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의2제3항,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기관 평가·인증"이라 함은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의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·인증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프로그램 평가·인증"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 및 학문분야 를 포함한다)의 운영 등을 평가·인증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평가·인증의 종류 등) ①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·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·인증과 프로그램 평가·인증으로 구분하다.
  - 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·인증 신청기관은 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정기관 지정신청 서의 "평가·인증의 종류"란에 각각 평가·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종류 및 인 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평가·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을 병기(倂記)하여야 하며, 교

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- 제4조(조직·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)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·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조직ㆍ기구 및 인력 관련
    - 가. 평가·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, 목 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
    - 나.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기관 평가·인증 또는 프로 그램 평가·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,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 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
    - 다.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·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을 것
    - 라.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·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(常勤) 평가지원조 직을 갖추고 있을 것
    - 마. 평가·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
  - 2. 평가 · 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 · 예산 관련
    - 가. 평가·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, 평가·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 보·집행하고 있을 것
    - 나.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·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, 평가·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,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
    - 다. 평가 · 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
- 제5조(평가·인증기준,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) ①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·인증기준,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기관 평가·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평가・인증기준 관련
    - 가. 평가·인증기준이「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 함할 것
    - 나. 평가・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・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

가 · 인증기준을 갖출 것

- 다. 평가·인증기준의 결정·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, 평가·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·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·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
- 2. 평가 · 인증방법, 절차 등 관련
  - 가. 평가·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,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,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·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
  - 나. 평가·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
  - 다. 평가·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 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
  - 라.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 · 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
  - 마. 평가·인증 결과를 평가·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
  - 바. 평가 · 인증 기준,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
-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·인증기준,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중 프로그램 평가·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의체(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)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1. 평가 · 인증기준 관련
  - 가. 평가·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목표,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,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, 학사관리, 학생, 교원·직원, 시설·설비,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
  - 나. 평가·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·인증기준을 갖출 것
  - 다. 평가·인증기준의 결정,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, 평가·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·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·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
- 2. 평가·인증방법,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준용 한다.

- 제6조(평가·인증 등 실적 관련 지정기준)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·인증 등 실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·인증 수행 실적이 있거나, 국내·외 평가·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·인증 실적 이 있을 것
  - 2. 신청기관의 평가·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
  - 3. 평가·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
  - 4.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 ·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
- 제7조(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)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의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- 1. "인정":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  - 2. "예비인정":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·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 유효기간 내에 제6조에 따른 평가·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.
  - 3. "불인정" :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다.
- 제8조(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)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.
  - 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"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"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신청기관의 회원 학교 명단이나 평가·인증 대상 학교 또는 교육과정 등, 프로그램 목록
  - 2. 신청기관의 인증판정위원회 명단(위원의 이력사항 포함) 및 운영규정
  - 3. 신청기관의 조직·인력 현황(평가·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근무자 명단 및 상 근 근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)
  - 4. 신청기관의 평가·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

- 5. 신청기관의 재무·회계 관련 규정
- 6. 신청기관의 평가 · 인증업무를 설명한 매뉴얼
- 7. 신청기관의 평가 · 인증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자료
- 8. 신청기관의 평가 · 인증에 관한 수수료 기준
- 9. 신청기관의 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
- 10. 기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
-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.
-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,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.
- ⑤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검토를 이행하도록 할 수있다.
- ⑥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,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현 장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신청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제7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신청기관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.
- 제9조(지도·감독)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  -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- **제10조(시정명령)**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영 제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
  - 2. 제9조에 의한 점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  - 3. 그 밖에 평가 · 인증의 공정성,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11조(지정철회와 취소)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인정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.
  -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지정을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.
  - ③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될 경우, 당해 기관은 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는 인정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